

##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'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 공고'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4월 21일  
환경부장관

###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

□ (연장 개요)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

구분	연장기간	해당대상
1차연장	1년	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2차연장	2년	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

※ 관련근거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대통령령 제33665호) 제33조 제2항
-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 (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) 제13조

○ 금회 공고건은 '1차연장' 사항에만 해당

※ 2차 연장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 예정

### 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·일정(1차연장)

□ (대상)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\*되는 혁신제품

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'25.6.28.

## □ 추진절차

① 신청서류 접수 → ② 연장검토 →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→ ④ 최종 연장 승인

## □ 추진일정

절 차	주 관	세부일정*
연장서류 접수	신청기업	'25.04.21.~'25.05.16.
연장서류 검토	환경부	'25.05.19.~'25.05.30.
지정 연장 심의·의결	조달정책심의위원회 (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)	'25.6월 내(예정)

\*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 3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연장 제외대상(1차연장)

### □ 연장 요건

○ 아래의 '가'항 부터 '라'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

- 가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
- 나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
- 다. 1차 연장기간(1년)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
- 라.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

구분	항목	세부사항
가	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</li> <li>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</li> </ul>
나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(최소 1건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</li> <li>○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</li> </ul>
다	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</li> <li>○ 중앙관서 시상·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 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</li> </ul>
라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</li> <li>○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</li> </ul>

## □ 연장 제외 대상

○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'신청대상에서 제외'

### 가.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

-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

### 나.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

-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(특허·실용신안)의 기간만료, 등록취소, 양도,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

### 다.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

-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
### 라.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

- 동일 품명·동일 기술(특허)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

## ④ 신청 서류(1차연장)

○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,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

번호	구분		필수여부	비고	
1	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		필수	붙임1	
2	서류제출 신뢰서약서		필수	붙임2	
3	신청자격 증빙자료 (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)	3-1 <sup>비고1</sup>	납품실적목록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	해당 시	붙임3
		3-2 <sup>비고2</sup>	구매계약서 *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	해당 시	-
		3-3 <sup>비고3</sup>	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	해당 시	-
		3-4 <sup>비고4</sup>	구매확약서	해당 시	붙임4
4	혁신제품 지정 인증서		필수	-	

비고1)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·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

(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·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)

비고2)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

비고3)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

비고4)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,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

## 5 신청 방법(1차연장)

□ 신청기간 : '25.4.21.(월) ~ '25.5.16.(금) 18:00 정각까지

※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,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.

○ 신청방법 : 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온라인(이메일)으로 제출

신청서류 접수처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/ innopro@keiti.re.kr

○ 문의처

신청접수 관련 문의처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/ (02)2284-1622

[붙임1]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

## 혁신제품 지정기간(1차 연장) 신청서

혁신제품명						
혁신제품 지정번호			혁신제품 지정기간			
회사개요	회사명			사업자번호	-	
	주 소	(□ - )				
	행정 담당자	직위/성명			부 서 명	
		전화번호			FAX번호	
기간연장 신청사유	아래 4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신청' 사유			해당여부	
	1	지정기간 동안 국·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			( )	
	2	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			( )	
	3	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·표창			( )	
	4	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-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			( )	
기간연장 제외여부	아래 2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'√' 체크 할 것 (중복체크 가능)					
	번호	지정기간 연장 '제외' 사유			해당여부	
	1	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·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만료된 경우			( )	
	2	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			( )	
	3	혁신제품 지정제품 중 우수조달제품(조달청)으로 지정된 경우 - 동일 품명·동일 기술(특허)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			( )	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25 . . .

업 체 명 :

대표자명 : (인)

환경부 장관 귀하



**[붙임3] 납품실적목록**

※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(예 :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,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)에 한함

**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**

번호	물품식별 번호	규격명	수량	금액(원)*	납품처		계약일자	비고
					국내/해외	기관명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* 해외실적의 경우 제출일 기준의 원화 환율로 산정하여 기입								

주) 혁신제품 지정기간(3년)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,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**물품  
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,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**를 붙임자료로  
첨부할 것 (단,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)

**[붙임4] 구매확약서**

## 혁신제품 구매확약서

- 동 자료는 연장타당성 심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수요기관 구매확인 목적으로 활용

<b>구매확약 수요기관</b>	기관명	
	담당자명	
	연락처	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,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및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동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관련 내용에 따라 작성 자료 등이 심사 절차에 활용함에 동의하십니까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
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,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**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.**

<b>혁신제품</b>	(혁신제품 지정번호) (혁신제품명)
<b>기업정보</b>	(기업명) (사업자등록번호)
<b>구매확약 희망규격</b>	(모델명) ☞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 (물품식별번호) ☞ 다수 규격 희망 시 필요 시 별도 붙임 생성 가능
<b>활용목적</b>	자율기재

※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

년    월    일

기관명 :

구매부서명 :

구매부서장 :

(인)

※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,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,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

**환경부 장관 귀하**